진도군 공고 제2024-280호

제294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94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진 도 군 수

1. 제294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1부.
2. 제294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각 1부.

목 록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담당부서	비고
2024-14	진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생활지원과	
2024-15	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무 과	
2024-16	진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총 무 과	
2024-17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총 무 과	
2024-18	진도군 국·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행복과	
2024-19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관리사업소	
2024-2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세무회계과	
2024-21	소상공인 지원 특별출연 동의안	경제에너지과	
2024-2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홍보실	

진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14

제출연월일 : 2024년 0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진도군 예비군 훈련장이 해남군 예비군 훈련장과 통합됨에 따라 지역 예비역 장병들이 먼 거리에 있는 훈련장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진도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경비 지원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안 제3조)

-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4 2. 21. ~ 3. 12.(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검토 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사항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03. 14. 원안의결

10. **참고사항** : 없음

진도군조례 제 호

진도군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1사단 제93여단 예비군훈련장(작계훈련지역 포함) 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진도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15

제출연월일 : 2024년 0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제2조)
   ○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4 2. 21. ~ 3. 12.(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검토 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사항**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03. 14. 원안의결

10. **참고사항** : 없음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진도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도군 재향경우회”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진도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진도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

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16

제출연월일 : 2024년 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도군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예산의 투명성 및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각급학교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보조사업의 범위 (안 제4조)**

- 학력향상, 교육시설·환경개선, 교육정보화, 교육과정운영, 체육증진, 체험·해외연수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사업

○ **심의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 (안 제5조, 제7조)**

- 교육경비 선정·심의를 위해 '진도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안 제12조, 제13조)**

-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후 교부결정서 통보

○ **보조금의 집행 (안 제14조)**

-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4. 1. 31. ~ 2. 19.(20일간) /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4. 3. 6.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도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교육 중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등) 진도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 및 관할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과 교육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2.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의 교육정보화(스마트 기기 등)사업

5.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육 증진에 관한 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외국어체험센터 운영경비 지원사업

9. 초·중·고교 역사·문화·예술 활동 등의 체험학습 활성화사업

10. 초·중·고교 학생 및 교직원의 어학능력증진을 위한 해외연수

11. 명문고 및 특성화고 육성지원사업

12.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군수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선정 심의

2.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또는 실무담당 공무원

3.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관내 학교의 장 또는 교사

4. 그 밖에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또는 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여, 해당 학교에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

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된 때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 보고 및 정산보고
2.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17

제출연월일 : 2024년 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있는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진도군민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초·중·고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지원금액 및 방법 (안 제3조)**

- 초·중·고등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지방자체단체 또는 국외에서 진도군으로 전입하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가능

○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에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4. 1. 31. ~ 2. 19.(20일간) /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4. 3. 6.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진도 아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도 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진도

군으로 전입하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입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관할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18

제출연월일 : 2024년 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진도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증가에 따른 조례 현행화

2. 주요내용

○ 진도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영유아 보육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4. 2. 14. ~ 3. 5.(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검토의견통보서, 반영계획서)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3. 6.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연번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꿈나무어린이집	진도읍 남동3길 19	24.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1>

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소 재 지	설치년도	비 고
1	의신 어린이집	의신면 돈지3길 17	93. 3. 4	
2	조도 어린이집	조도면 창리길 4-7	10. 7. 2.	
3	군내 어린이집	군내면 금골길 37	15. 4. 1.	
4	왕고개 어린이집	의신면 왕온로 20-4	17. 3. 1.	

개 정 안

<별표1>

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소 재 지	설치년도	비 고
1	의신 어린이집	의신면 돈지3길 17	93. 3. 4	
2	조도 어린이집	조도면 창리길 4-7	10. 7. 2.	
3	군내 어린이집	군내면 금골길 37	15. 4. 1.	
4	왕고개 어린이집	의신면 왕온로 20-4	17. 3. 1.	
5	꿈나무 어린이집	진도읍 남동3길 19	24. 1. 1.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19

제출연월일 : 2024년 0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신규 및 미포함 체육시설을 정의에 추가하고,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용어의 정의에 대한 정비.(안 제2조)
   - 추가: 아리랑체육공원, 씨름장, 육상준비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정구장, 피지컬센터, 볼링장.
   ○ 별지 서식 중 인감증명서 요구 문구 삭제.(안 별지 제7호 서식)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4. 01. 24. ~ 02. 13.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검토 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사항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03. 06. 원안의결

10. 참고사항 : 해당없음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시설“이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국궁장,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아리랑체육공원, 씨름장, 육상준비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정구장, 피지컬센터, 볼링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기호(-) 중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을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을 “단체”로, 같은 기호(-) 중 “각 1부”를 “1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국궁장,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 12. (생 략)	제2조(정의) ----------. 1. “체육시설“이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국궁장,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아리랑체육공원, 씨름장, 육상준비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정구장, 피지컬센터, 볼링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 12.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 서식 첨부서류 1. (생 략)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7호 서식 첨부서류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 안 번 호	2024-20

제출연월일 : 2024년 3월 일
제 출 자 : 진 도 군 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진도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활용 예정재산 부지 매입(세무회계과)
○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 관리센터」 신축(진도개축산과)
○ 「동물보호센터」 신축(진도개축산과)
○ 「모사항 어촌뉴딜 300」 행복드림센터 신축부지 매입(해양항만과)
○ 「지산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가족행복과)
○ 「제2향토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문화예술체육과)
○ 진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환경수질과)
○ 백동 무궁화동산 리모델링 및 경관개선 부지 매입(산림휴양과)
○ 2024년 산림사업 추진 편입토지 매입(산림휴양과)
○ 산림사업시행 편입토지 매입(산림휴양과)

3. 세부 내역 : 첨 부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첨 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334	579,849 6,476	5,380 32,543				1334	579,849 6,476	5,380 32,543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33	579,849	5,380				133	579,849	5,38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4	6,476	32,543				4	6,476	32,543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목 차

심의 번호	제 목	심 의 요 지	제안부서
1	공공활용 예정재산 부지 매입	- 위치 : 진도읍 교동리 405 - 지목/면적 : 전 / 1,850㎡(560평) - 대장가액(감정) : 700백만원 - 목 적 : 공공사업 및 개발사업 등 장래 필요한 공공활용 예정재산 확보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2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 관리센터」 신축	- 위 치 : 진도읍 동외리 268-14 - 면적/규모 : 4,488㎡(1,357평) / 1층 - 금 액 : 6,000백만원 - 목 적 : 진도개의 안전한 양육환경 기반 조성	진도개축산과 (혈통관리팀)
3	「동물보호센터」 신축	- 위 치 : 진도읍 동외리 60 - 면적/규모 : 199㎡(60평) / 1층 - 금 액 : 1,000백만원 - 목 적 : 반려동물관련 인프라 확충 및 동물 복지 관련사업 건전 도모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4	「모사항 어촌뉴딜 300」 행복드림센터 신축부지 매입	- 위 치 : 고군면 향동리 252 - 지목/면적 : 전 / 1,428㎡(432평) - 대장가액(감정) : 35백만원 - 목 적 : 모사마을의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복지공간 조성	해양항만과 (항만신활력팀)
5	「지산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 위 치 : 지산면 인지리 342-17 외 3필지 - 면적/규모 : 188.46㎡(57평) / 1층 - 금 액 : 1,000백만원 - 목 적 :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심의 번호	제 목	심 의 요 지	제안부서
6	「제2향토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 위 치 : 진도읍 동외리 1185-5 - 지목/면적 : 전 / 134㎡(40평) - 대장가액(감정) : 97백만원 - 목 적 : 제2향토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정책팀)
7	진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 위 치 : 군내면 덕병리 1173 - 면 적 : 1,601㎡(484평) - 금 액 : 24,543백만원 - 목 적 :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	환경수질과 (환경센터팀)
8	백동 무궁화동산 리모델링 및 경관개선 부지 매입	- 위 치 : 임회면 백동리 745 외 4필지 - 면 적 : 4,713㎡(1,425평) - 대장가액(감정) : 70백만원 - 목 적 : 백동 무궁화동산 리모델링 및 주변 도로잔여지 경관개선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
9	2024년 산림사업 추진 편입토지 매입	- 위 치 : 진도읍 동외리 250 외 8필지 - 면 적 : 34,292㎡(10,373평) - 대장가액(감정) : 722백만원 - 목 적 :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 제공	산림휴양과 (공원녹지팀)
10	산림사업시행 편입토지 매입	- 위 치 : 의신면 침계리 산13 외 115필지 - 면 적 : 537,432.5㎡(162,573평) - 대장가액(감정) : 3,756백만원 - 목 적 : 2024년도 산림복지 단지 및 구름숲 수변공원 조성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

공공활용 예정재산 부지 매입

1. 심의주문

○ 공공사업 및 개발사업 등 장래 필요한 공공활용 예정재산을 확보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우리 군 미래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 개발에 필요한 공공활용 예정재산을 매입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토지 매입

구분	위 치	지목	면적(㎡)	재산가액 (백만원)	활용방안	비 고
계			1,850 (560평)	700		
토지	진도읍 교동리 405	전	1,850 (560평)	700	공공시설용지 (공모사업 등)	제1종 일반주거지역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5. 주관과 의견

○ 공공사업 등 개발사업에 활용하고 미래 군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활용 예정재산을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Ⅰ 위 치 도(진도읍 교동리 405)

Ⅱ 현장사진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 관리센터」 신축

1. 심의주문

○ 진도개의 안전한 양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 관리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진도개 양육장의 시설 노후화 및 천연기념물 진도개 수용능력 부족

○ 천연기념물 진도개 관리체계가 민간에서 양육·관리함에 따라 각종 관리 부실문제가 빈발하여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관리센터 건립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 및 보호 기반 구축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286-14
- 사업비 : 60억원(국비 42억, 도비 7.2억, 군비 10.8억)
- 규　모 : 지상 1층(연면적 4,488㎡)
- 내　용 : 견사동, 관리동, 심사장, 운동장 등

○ 신축대상

건물명	소재지	건축물 현황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구조	연면적(㎡)	층수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관리센터	진도읍 동외리 286-14	철근 콘크리트	4,488 (1,357평)	1	6,000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5. 주관과 의견

○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보호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 관리센터」 건립이 타당함

Ⅰ 위 치 도

Ⅱ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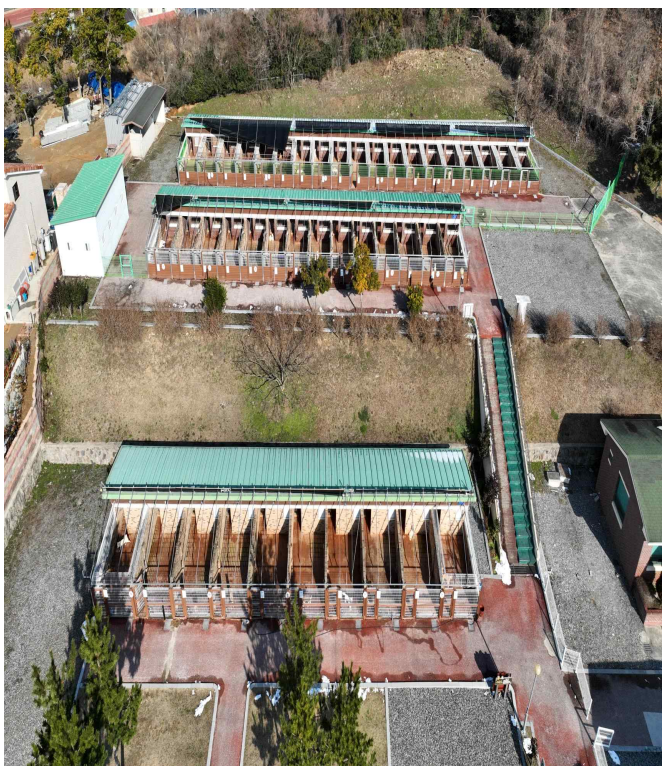

「동물보호센터」 신축

1. 심의주문

○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하고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유실·유기동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등 체계적인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동물복지 실현

○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노후화 및 유기·유실동물 수용 부족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60
- 사업비 : 10억원(균특비 3억, 군비 7억)
- 규　모 : 지상 1층(연면적 199.69㎡)
- 내　용 : 보호실, 사무실, 입양실, 등

○ 신축대상

건물명	소재지	건축물 현황			사업비 (백만원)
		구조	연면적(㎡)	층수	
동물보호센터	진도읍 동외리 60	철근 콘크리트	199.69 (60평)	지상 1층	1,000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5. 주관과 의견

○ 유실·유기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수용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신청 하고자함

Ⅰ 위 치 도

진도개축산과
신축부지
산58-9임
53임
산58-8임
54전
55전
281-4 원
286-1대
278대
277 원
산57임
275-1전
275임
273전
56전
276묘
279-1대
274 원
272 원
산58-15임
43전
44전
42전
45전
40-1전
40전
269-2도
269-5전
269-1장
270-2도
268-2대
270-1전
58 원
85전
59-1 원
59-2 원
267-1전
267전
263-1전
262-1 원
1309 구
264전
266전
261-1전
261-5전
60
84-2답
84-1답
86-3전
89전
247-4 전
261-3전
265전
83-1전
248-1 전
249전
250전
259전
260전
83전
79임
62전
82전
230답
229 전
227 대
253전
254-1답
254답
80임
81전
78전

Ⅱ 현장사진

「모사항 어촌뉴딜 300」 행복드림센터 신축부지 매입

1. 심의주문

○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제47조의6에 의해 추진중인 「모사항 어촌뉴딜 300 사업」 행복드림센터(다목적센터) 부지 매입 심의

2. 제안이유

○ 「모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관련하여 추진중인 행복드림센터는, 노인회관이 유일한 복지시설로 주민공동체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모사마을의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부지인 고군면 향동리 252번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토지 매입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액(백만원)	비 고
1	고군면 향동리 252	전	1,428	35	행복드림센터 조성부지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5. 주관과 의견

○ 낙후된 어촌어항 지역의 산업발전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추진중인 「모사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반영된 '행복드림센터 조성' 부지의 확보를 통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대상지 위치도(위성)

행복드림센터 부지(고군면 향동리 252, A=1,428㎡)

현장사진

「모사항 어촌뉴딜300사업」 행복드림센터 부지 - 현장사진

「행복드림센터 조성」 사업개요(안)

사업개요 및 평면도

- **사 업 명** :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 **위　　치** :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252 일원
- **사업내용**
  - 행복드림센터 신축(330㎡, 1층:174㎡, 2층:156㎡)
  - 센터진입로 확장 및 족구장 등 부대시설 및 조경 1,428㎡
- **사 업 비** : **1,440백만원**(국비1,008백만원, 도비129.6백만원, 군비302.4백만원)

<행복드림센터 조감도(안)>

- 연면적 : 330㎡
- 건축면적 : 167.55㎡
  - 1층 : 174㎡
  - 2층 : 156㎡
- 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 : 다목적센터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행복드림센터 배치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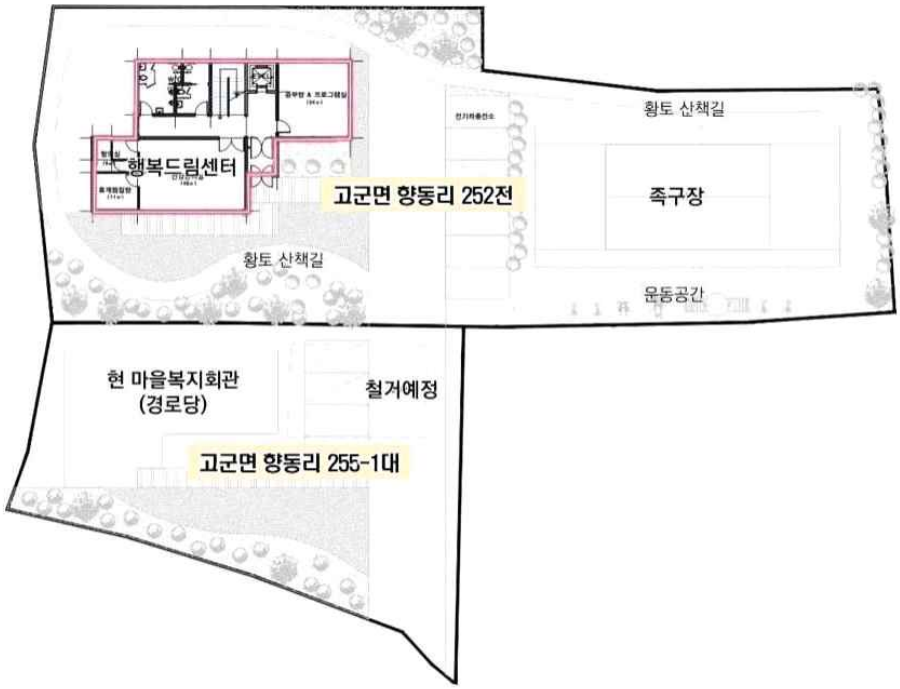

행복드림센터 식재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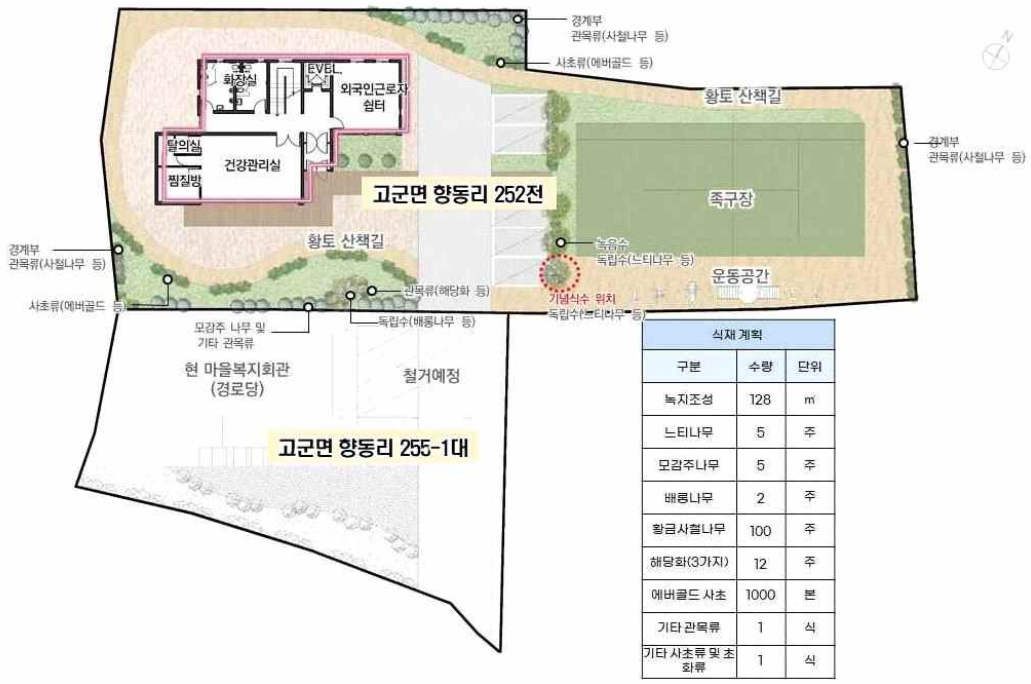

식재 계획		
구분	수량	단위
녹지조성	128	㎡
느티나무	5	주
모감주나무	5	주
배롱나무	2	주
황금사철나무	100	주
해당화(3가지)	12	주
에버골드 사초	1000	본
기타 관목류	1	식
기타 사초류 및 초화류	1	식

「지산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1. 심의주문

○ 지산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

2. 제안이유

○ 기 건물 사용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342-17 외 3필지
- 사업비 : 10억원(특별조정교부금 5억, 군비 5억)
- 규　모 : 지상 1층(연면적 188.46㎡)
- 내　용 : 회의실, 사무실, 다목적실 등

○ 신축대상

건물명	소재지	건축물 현황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구조	연면적(㎡)	층수		
지산면 노인복지회관	지산면 인지리 342-17 외 3필지	철근 콘크리트	188.46 (57평)	지상 1층	1,000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5. 주관과 의견

○ 지산면 문화복지센터 내 위치한 현재 분회 사무실의 경우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이 불편하며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코자 지산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대상지 위치도(위성)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지산면사무소
346-5전
345-1대
916답
918구
산14-6임
92-2전
345-4대
818-7구
산14-9임
92전
342-1답
346-10대
92-1전
342-16대
345-3대
342-13답
365-1도
342-26도
342-20잡
342-19잡
342-10답
342-27도
364-8전
92-3전
342-11도
364-7전
92-4전
346-12대
산14-10임
364-5대
92-5전
342-23잡
364-2도
산40임
364-3전
341-1잡
364-6대
산40-2임
357-2도
342-24대
343답
364-9종
0-5가
341-10도
358도
364-1전
342-25잡
94-1전
342-9대
341-7도
341-5대
359대
362-1대
363-1전
361-2대
94전
359-1대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지
지산면사무소

현장사진

「제2향토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1. 심의주문

○ 제2향토문화회관(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2. 제안이유

○ 구 서울웨딩홀 잔여 부지 매입을 통해 제2향토문화회관(생활문화센터) 건립, 인근 문화시설(향토문화회관, 무형문화재전수관, 작은영화관, 문화원, 가족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작가들의 작품 전시공간 및 군민을 위한 세미나실,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① 토지 매입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백만원)	비 고
1	토지	진도읍 동외리 1185-5	전	134 (40평)	97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5. 주관과 의견

○ 제2향토문화회관(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작가들의 작품 전시 공간 및 군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 제공 등 부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대상지 위치도(위성)

제2향토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관
가족센터
향토문화회관
여성플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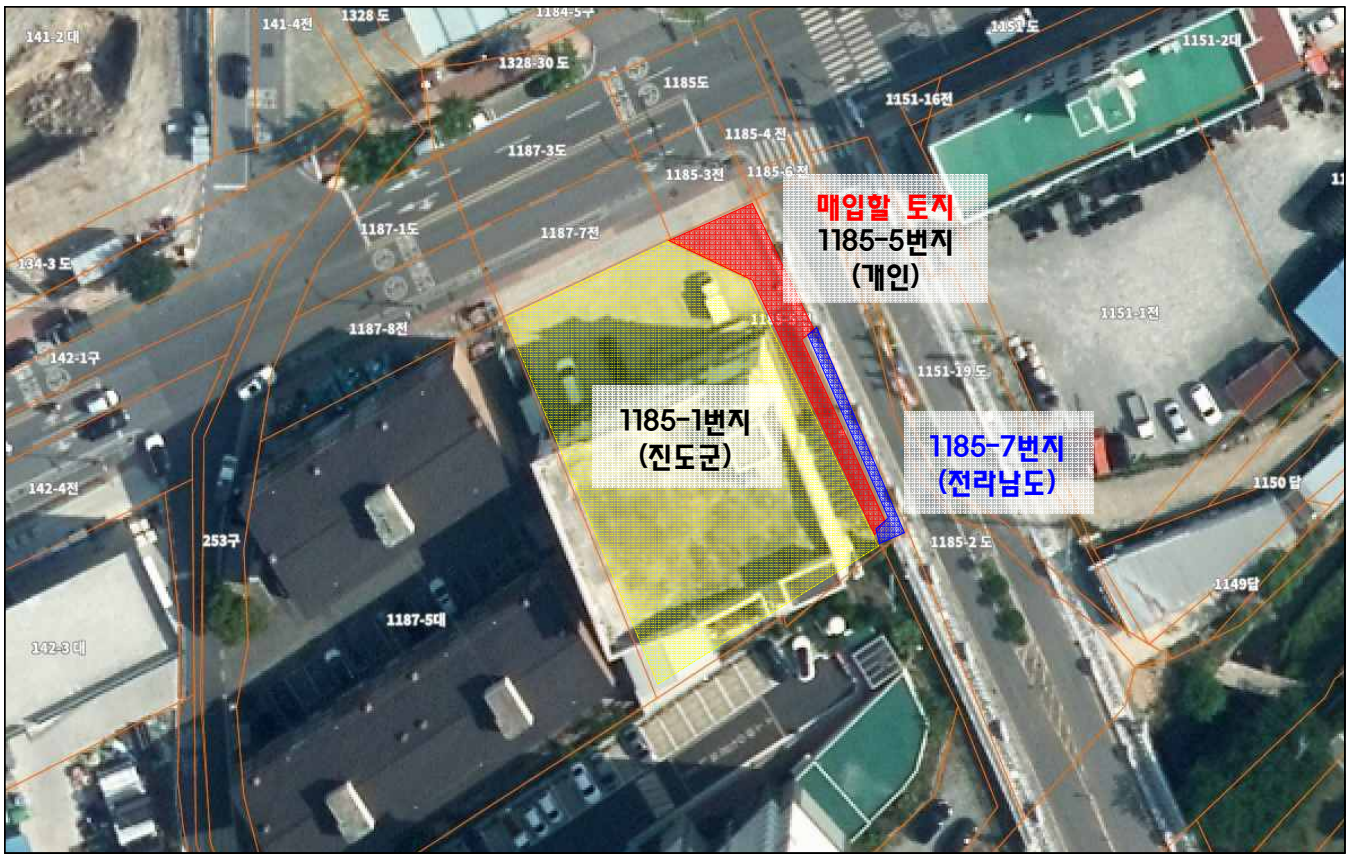
매입할 토지
1185-5번지
(개인)
1185-1번지
(진도군)
1185-7번지
(전라남도)

현장사진

제2향토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
매입예정 토지
진도읍 동외리 1185-5번지

제2향토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
JIN DO
Seoul Wedding Hall
매입예정 토지
진도읍 동외리 1185-5번지

진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 심의주문

○ 진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축물 취득에 따른 심의

2. 제안이유

○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이 노후하여(16년 경과) 소각능력 저하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대체 신설이 필요하며,

○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건축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진도군 환경관리센터 내
- 사 업 비 : 245억원(국비 30% 군비 70%)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3,538㎡)
- 내　　용 : 폐기물 처리시설

○ 신축 대상

건물명	소재지	건축물 현황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구조	연면적(㎡)	층수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진도군 환경관리센터 내	철근 콘크리트	3,538	지상1층	24,543	35톤/일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5. 주관과 의견

○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대상지 위치도(위성)

현장사진

백동 무궁화 동산 리모델링 및 경관개선 부지 매입

1. 심의주문

○ 백동 무궁화 동산 리모델링 및 경관개선 부지 매입

2. 제안이유

○ 2024년도 백동무궁화동산 리모데링 및 주변 도로잔여지 경관개선을 위하여 인근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토지 매입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재산가액(천원)	비 고
총계		5필지			4,713 (1,425평)	70,695	
1	토지	임회 백동	745	답	605	9,075	
2			747	답	1,073	16,095	
3			748-2	답	2,227	33,405	
4			750	답	527	7,905	
5			751-2	답	281	4,215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5. 주관과 의견

○ 진도↔제주간 여객선 개통으로 관광객이 늘고 있는 초입 백동 무궁화 동산을 리모델링하고 진입로 국도18호선 개발 도로 잔여지를 화단으로 조성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함

대상지 위치도(위성)

현장사진

2024년 산림사업 추진 편입토지 매입

1. 심의주문

○ 2024년 산림사업 편입토지 취득에 따른 심의

2. 제안이유

○ 도시숲, 생활밀착 숲 조성은 물론 산림분야 공모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대상지 주변 편입토지를 매입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토지 매입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재산가액(천원)	비 고
총계		9필지			34,292 (10,373평)	722,556	
1	토지	진도 동외	250	전	1,203	108,270	
2			248-1	전	558	50,220	
3			249	전	145	13,050	
4			231	전	436	39,240	
5			산97	임야	22,116	199,044	
6			산99	임야	893	8,037	
7			292-3	도로	5,686	255,870	
8		임회 고정	965-13	답	1,965	29,475	
9			965-12	답	1,290	19,350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5. 주무부서 의견

○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모사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군민 또는 관광객 등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 제공하여 보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객 유도 및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

위치도 [연번 1~6]

현장사진

위치도 (연번 7)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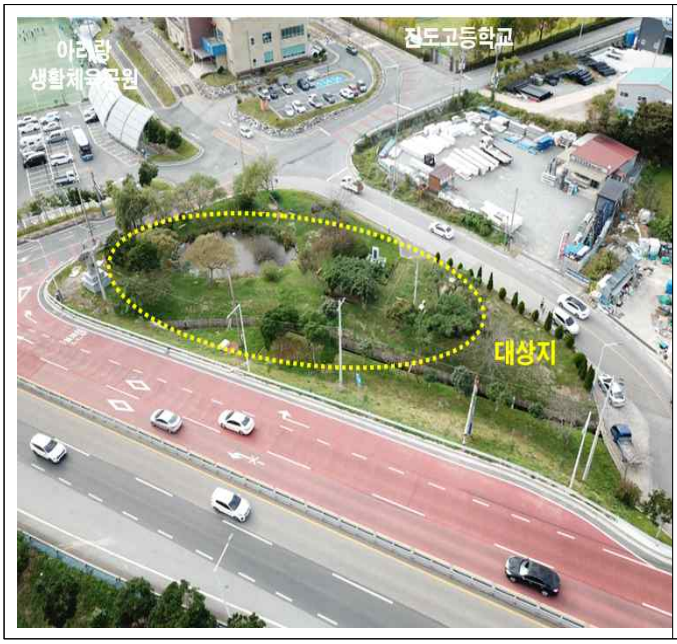

위치도 [연번 8~9]

현장사진

산림사업시행 편입토지 매입

1. 심의주문

○ 산림사업시행 편입토지 취득에 따른 변경 심의

2. 제안이유

○ 2024년도 산림복지단지 및 구름숲수변공원 조성 등 경관개선을 위하여 편입토지를 매입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건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변경 심의 내용

구분	필지	면적(㎡)	재산가액(백만원)	의결일자	비고
기존	의신 침계 산27 외 53 필지	323,344 (97,811평)	905	2023.03.09.	24필지 매입완료
변경	**의신 침계 산13 외 115필지**	**537,432.5 (162,573평)**	**3,756**	-	**변경(기존 포함)**

○ 토지 매입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재산가액(천원)	비 고
합계		**116필지**			**537,432.5 (162,573평)**	**3,756,409**	
계		**30필지**			**265,937**	**1,442,987**	
1	토지 및 임야	의신 침계	산13	임	17,894	58,155	저수지
2			산14	임	10,457	32,416	
3			산15	임	10,661	31,983	
4			산16	임	18,050	49,637	
5			산17	임	27,868	76,637	

6	토지 및 임야	의신 침계	산25	임	11,901	32,727	저수지
7			산26	임	20,886	57,436	
8			산28	임	29,287	80,539	
9			산30	임	7,825	21,518	
10			산32	임	1,831	5,218	
11			산33-1	임	2,281	6,500	
12			산33-2	임	8,754	24,948	
13			산34	임	14,087	41,556	
14			산35	임	19,826	61,460	
15			산35-6	임	30,625	91,875	
16			5	답	407	4,985	
17			808	전	797	10,361	
18			831	답	1,344	29,568	
19			832	답	2,577	60,559	
20			833	답	3,160	74,260	
21			834	답	1,289	29,647	
22			835	답	2,496	57,408	
23			836	답	972	22,356	
24			837	전	1,306	31,997	
25			837-1	임	1,286	17,361	
26			838	전	468	10,764	

27	토지 및 임야	의신 침계	838-1	전	1,661	38,203	저수지
28			838-2	전	12,628	303,072	
29			847	답	1,336	31,396	
30			866-2	답	1,977	48,436	
계		**80필지**			**267,655.5**	**2,252,825**	
1	토지 및 임야	의신 사천	산74	임	17,554	66,705	산림욕장
2			산80	임	9,818	39,272	
3			산81	임	7,240	28,960	
4			산84	임	9,025	24,818	물놀이장
5			산85-6	임	1,827	7,308	저수지
6			산88	임	13,768	51,630	
7			산106-1	임	7,309	21,927	
8			산106-4	임	676	2,028	
9			산108	임	17,851	53,553	
10			산109	임	793	2,220	
11			산110-1	임	3,306	9,587	
12			산111	임	10,175	33,068	
13			산113	임	595	1,666	
14			산114-2	임	496	1,388	
15			산116	임	3,971	11,118	
16			산117	임	8,871	24,838	

17	토지 및 임야	의신 사천	산117-1	임	15,391	43,094	저수지
18			산118	임	17,498	47,244	
19			산118-1	임	3,734	10,081	
20			산138	임	28,120	87,172	
21			산139	임	16,692	317,231	
22			565	답	2,175	39,150	산림욕장
23			566	답	2,364	40,188	
24			568	전	932	15,844	
25			568-1	전	10,473	178,041	
26			569	답	2,896	54,300	
27			569-1	답	526	9,862	
28			570	답	704	13,200	
29			570-1	임	198	1,534	
30			571	답	377	7,068	
31			571-1	임	436	3,379	
32			572	답	1,580	29,625	
33			572-1	임	179	1,432	
34			572-2	임	456	3,534	
35			573	답	255	4,845	

36			585-1	전	487.7	9,266	
37	토지 및 임야	의신 사천	587-1	전	119.9	2,278	산림욕장
38			607	묘	192	2,976	
39			608	잡	519	8,304	
40			609	잡	522	8,352	
41			612	답	364	5,096	
42			622	전	387	5,418	물놀이장
43			744	전	4,505	64,196	저수지
44			748	유	919	3,216	
45			837	전	316	5,846	
46			838	대	545	11,445	
47			838-3	전	1,257	23,254	
48			838-7	대	138	2,898	
49			847	전	397	7,344	
50			870	답	350	7,350	
51			914-1	전	962	17,556	물놀이장
52			914-2	임	807	3,228	
53			915	전	407	5,494	
54			966-1	답	1,897	41,734	저수지
55			967-1	대	76	1,748	
56			967-2	대	337	7,751	

57			967-3	전	549	12,627	
58	토지 및 임야	의신 사천	967-4	답	1,353	31,119	저수지
59			967-7	전	5,750	126,500	
60			967-9	전	137	3,151	
61			968	임	60	180	
62			969	답	417	7,089	
63			970	전	526	8,942	
64			971	답	506	8,602	
65			1031-1	답	1,099.2	24,182	
66			1031-2	답	1,758.3	38,682	
67			1031-3	답	1,691.9	37,221	
68			1031-4	답	1,318.9	29,015	
69			1031-5	답	1,034.7	22,763	
70			1031-6	답	1,038.8	22,853	
71			1031-11	답	138.4	3,044	
72			1032-1	답	3,114.4	66,959	
73			1032-2	답	2,598.2	55,861	
74			1032-3	답	2,628.7	56,517	
75			1033-2	답	716.5	15,763	
76			1033-4	답	1,006.8	22,149	
77			1033-6	답	253.4	4,054	

78			1034-1	답	2,184.9	43,698	
79	토지 및 임야	의신 사천	1034-2	답	2,426.7	48,534	저수지
80			1035-1	답	1,582.1	31,642	
계		**6필지**			**3,840**	**60,597**	
1	토지 및 임야	군내 둔전	산50	임	196	1,176	항아리 공원
2			산50-2	임	343	2,058	
3			산50-3	임	412	2,472	
4			23-2	전	595	11,305	
5			25	답	251	4,769	
6			25-1	전	2,043	38,817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5. 주관과 의견

○ 의신면 사천권 및 군내면 둔전리 일원 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구름숲수변공원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조성은 물론 주기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대상지 위치도(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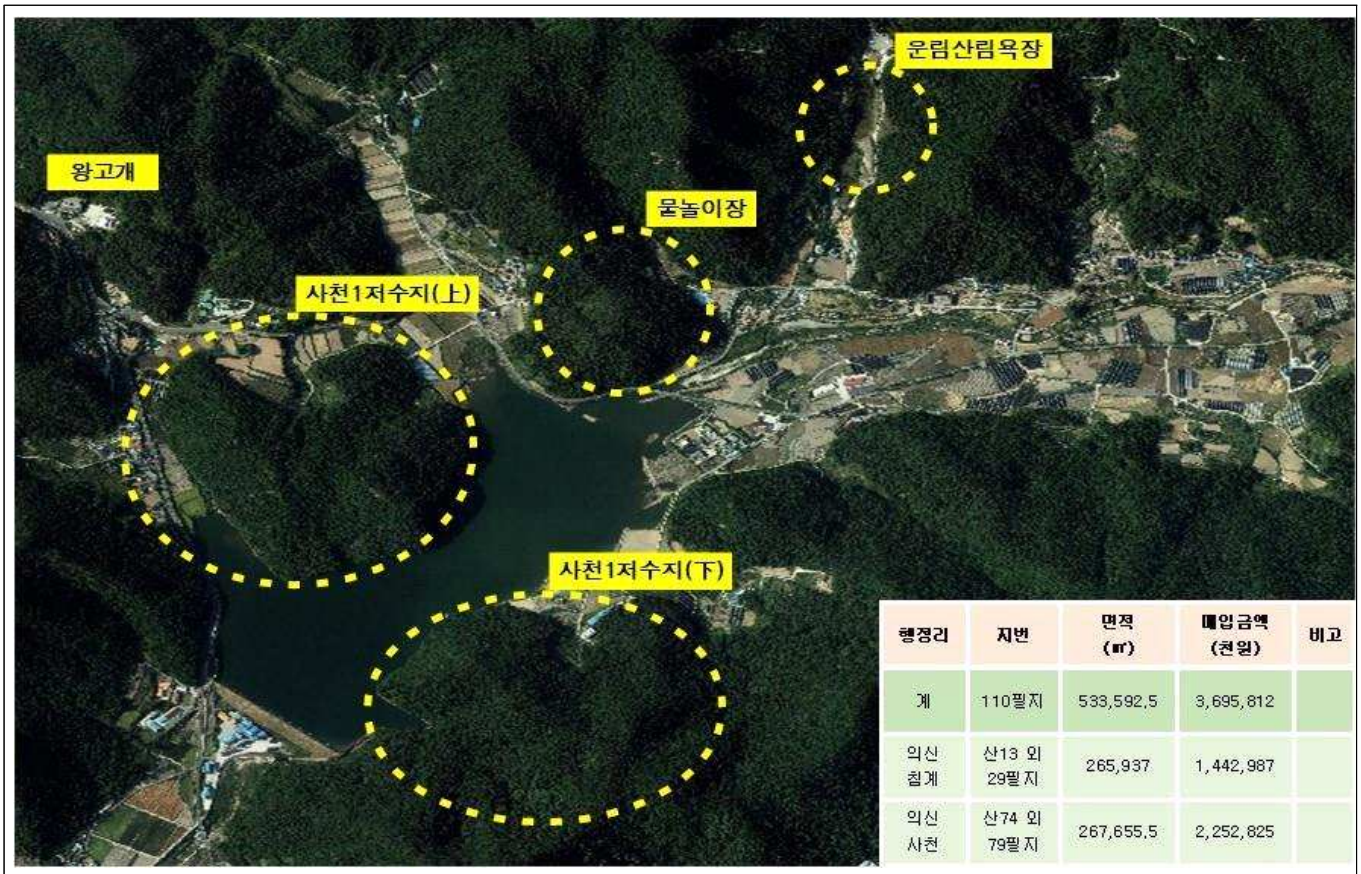

행정리	지번	면적 (㎡)	매입금액 (천원)	비고
계	110필지	533,592.5	3,695,812	
의신 침계	산13 외 29필지	265,937	1,442,987	
의신 사천	산74 외 79필지	267,655.5	2,252,825	

행정리	지번	면적 (㎡)	매입금액 (천원)	비고
계	6필지	3,840	60,597	
군내 둔전	산50 외 5필지	3,840	60,597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4 -1호	공공활용 예정재산 부지 매입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 위 치 : 진도읍 교동리 405 - 면 적 : 1,850㎡(560평) - 대장가액(감정) : 700백만원 - 목 적 : 공공활용 예정재산 부지 매입 (공공시업 예정부지)	가결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4. 3.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홍 섭	우홍섭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림	이상림		
9	위 원	김 미 경	김미경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4 -2호	「천연기념물 진돗개 보호 관리센터」 신축	진도개축산과 (혈통관리팀)	- 위 치 : 진도읍 동외리 268-14 - 면적/규모 : 4,488㎡(1,357평) / 1층 - 금 액 : 6,000백만원 - 목 적 : 진도개의 안전한 양육환경 기반 조성	가결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4. 3.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가(可)	부(否)	사 유
1	위 원 장	우 홍 섭	우홍섭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림	이상림		
9	위 원	김 미 경	김미경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4 -3호	「동물보호센터」 신축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 위 치 : 진도읍 동외리 60 - 면적/규모 : 199㎡(60평) / 1층 - 금 액 : 1,000백만원 - 목 적 : 반려동물관련 인프라 확충 및 동물 복지 관련사업 전천 도모	가결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4. 3.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홍 섭	우홍섭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림	이상림		
9	위 원	김 미 경	김미경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4 -4호	「모사항 어촌뉴딜 300」 행복드림센터 신축부지 매입	해양항만과 (항만신활력팀)	- 위 치 : 고군면 향동리 252 - 지목/면적 : 전 / 1,428㎡(432평) - 대장가액(감정) : 35백만원 - 목 적 : 모사마을의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복지공간 조성	가결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4. 3.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홍 섭	우홍섭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림	이상림		
9	위 원	김 미 경	김미경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4 -5호	[지산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위 치 : 지산면 인지리 342-17 외 3필지 - 면적/규모 : 188.46㎡(57평) / 1층 - 금 액 : 1,000백만원 - 목 적 :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	가결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4. 3.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홍 섭	우홍섭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림	이상림		
9	위 원	김 미 경	김미경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4 -6호	「제2향토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정책팀)	- 위 치 : 진도읍 동외리 1185-5 - 지목/면적 : 전 / 134㎡(40평) - 대장가액(감정) : 97백만원 - 목 적 : 제2향토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가결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4. 3.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가(可)	부(否)	사 유
1	위 원 장	우 홍 섭	우홍섭		
2	부위원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림	이상림		
9	위 원	김 미 경	김미경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4 -7호	진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환경수질과 (환경센터팀)	- 위 치 : 군내면 덕병리 1173 - 면 적 : 1,601㎡(484평) - 금 액 : 24,543백만원 - 목 적 :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	가결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4. 3.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홍 섭	우홍섭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림	이상림		
9	위 원	김 미 경	김미경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4 -8호	백동 무궁화동산 리모델링 및 경관개선 부지 매입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	- 위 치 : 임회면 백동리 745 외 4필지 - 면 적 : 4,713㎡(1,425평) - 대장가액(감정) : 70백만원 - 목 적 : 백동 무궁화동산 리모델링 및 주변 도로잔여지 경관개선	가결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4. 3.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홍 섭	우홍섭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림	이상림		
9	위 원	김 미 경	김미경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4 -9호	2024년 산림사업 추진 편입토지 매입	산림휴양과 (공원녹지팀)	- 위 치 : 진도읍 동외리 250 외 8필지 - 면 적 : 34,292㎡(10,373평) - 대장가액(감정) : 722백만원 - 목 적 :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 제공	가결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4. 3.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홍 섭	우홍섭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림	이상림		
9	위 원	김 미 경	김미경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4 -10호	산림사업시행 편입토지 매입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	- 위 치 : 의신면 침계리 산13 외 115필지 - 면 적 : 537,432.5㎡(162,573평) - 대장가액(감정) : 3,756백만원 - 목 적: 2024년도 산림복지 단지 및 구름숲 수변공원 조성	가결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4. 3.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홍 섭	우홍섭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림	이상림		
9	위 원	김 미 경	김미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024-21

제출연월일 : 2024년 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지역 상가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기 관 명: 전남신용보증재단

○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설 립 일: 2001. 7. 31.

○ 주요기능: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출연기간: 2024년 ~ 사업 종료 시 까지

다. 출연금액: 매년 1억원

라. 출연목적: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전액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으로 실질적 금융 혜택 제공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4. 주무부서 의견

○ 소상공인의 금융 정책지원 확대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첨부서류

○ 2024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계획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문서번호	경제에너지과-1094
보존기간	3년
결재일자	2024. 3. 13.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지역경제팀 장	경제에너지과 장	부 군 수	군 수
하주희	곽현아	전 곽현아	이정성	김희수
				협조

2024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계획

Jindo 보배섬

진 도 군

(경제에너지과)

2024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계획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100%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으로 실질적 금융 혜택 제공

Ⅰ 지원근거

○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Ⅱ 사업개요

○ **(출연금액)** 1억원

○ **(출연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 **(보증규모)** 10억원(출연금의 10배)

○ **(출연기간)** '24년 ~ 사업 종료 시까지

○ **(지원대상)** 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사업내용)** 진도군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도내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원현황(`23년 기준)

(단위: 원)

구분	연번	시군명	출연금	비고
2023년	계	6개	1,626,000,000	
	1	목포시	200,000,000	
	2	여수시	300,000,000	
	3	순천시	150,000,000	
	4	광양시	200,000,000	
	5	곡성군	50,000,000	
	6	해남군	320,000,000	
	7	함평군	106,000,000	

구분	연번	시군명	출연금	비고
	8	영광군	100,000,000	
	9	완도군	100,000,000	
	10	진도군	100,000,000	

Ⅲ 보증운용

○ **(보증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단,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이자지원(이차보전) 또는 운영자금을 수혜중인 경우 보증지원 제외

○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기업(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포함)
- 보증심사운용요령 제5조 제1항 보증억제 기업
  - 재단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CCC등급 이하인 기업
  - 회생지원보증 취급 후 1년 이내의 신규보증 신청기업
-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內 지원 제외 업종

○ **(대상채무)** 운전자금

○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3천만원(기보증 포함)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 단, 지자체 및 정부 정책자금 연계 시 해당 정책자금 기간 적용

○ **(보증비율)** 전액보증

○ **(보증료율)** 연 0.8% 고정

Ⅲ 추진계획

○ (업무협약)

- 협약시기: 2024. 3.
- 협약기관: 진도군 ↔ 전남신용보증재단

○ (업무지원)

- 시 행 일: 매주 목요일 신용보증재단 출장 상담
- 장　　소: 농협은행 진도군지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 호	2024-22

제출년월일 : 2024. 3. .
제 출 자 : 진 도 군 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코자 함.

□ 주요골자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 정 (A)	기 정 (B)	증 감 액 (A-B)	%
합 계	515,783,887	421,904,707	93,879,180	22.3
일 반 회 계	506,100,090	412,240,000	93,860,090	22.8
특 별 회 계	9,683,797	9,664,707	19,090	0.2

□ 의안내용 : 첨부

【첨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조서

□ 세 입

(단위 : 천원)

회계별	요구내역				심의결과 증감액	비고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		
합 계	**515,783,887**	**421,904,707**	**93,879,180**	**22.3**	**-**	
일반회계	506,100,090	412,240,000	93,860,090	22.8	-	
특별회계	9,683,797	9,664,707	19,090	0.2	-	

□ 세 출

(단위 : 천원)

회계별	요구내역			심의결과		비고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액	예비비 계상액	
합 계	**515,783,887**	**421,904,707**	**93,879,180**	**-**	**-**	
일반회계	506,100,090	412,240,000	93,860,090	-	-	
특별회계	9,683,797	9,664,707	19,090	-	-	
소 계	9,683,797	9,664,707	19,090	-	-	
상수도	8,393,263	8,393,263	-	-	-	
의료급여기금	686,334	667,244	19,090	-	-	
자활기금	603,000	603,000	-	-	-	
주민소득 지원기금	1,200	1,200	-	-	-	

□ 기금회계 [수입]

(단위 : 천원)

회계별	요구내역				심의결과 증감액	비고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		
기금회계	64,779,877	63,952,125	827,752	1.3	-	

□ 기금회계 [지출]

(단위 : 천원)

회계별	요구내역			심의결과		비고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액	예비비계상액	
합계	64,779,877	63,952,125	827,752	-	-	
농수산물 가격안정	8,561,133	8,488,165	72,968	-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70,456	70,456	0	-	-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213,033	188,415	24,618	-	-	
재난관리	2,382,453	2,115,103	267,350	-	-	
식품진흥	63,062	50,613	12,449	-	-	
문화진흥	6,702,362	6,570,000	132,362	-	-	
통합재정안정화	44,387,469	44,217,288	170,181	-	-	
체육진흥	1,500,335	1,500,335	0	-	-	
고향사랑	899,574	751,750	147,824	-		